속초2차 IPARK

속초2차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20.01.0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2.20.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 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속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속초시 3개월이상 거주자(2019년11월20일 이전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항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 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 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dc.i-park.com/sokcho2)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속초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만 계약금(10%)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 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0.03.02.(월)	2020.03.03.(화)	2020.03.04.(수)	2020.03.11.(수)	2020.03.24.(화) ~ 2020.03.26.(목)
방법	인터넷 청약(08:00~17:30)	인터넷 청약(08:00~17:30)	인터넷 청약(08:00~17:30)	개별확인(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한국감정원 (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어플앱)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 '청약홈'검색 애플앱스토어 어플 – 향후 이용 가능		*한국감정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어플앱) 구글플레이스토어 – '청약홈' 검색 애플앱스토어 어플 – 향후 이용가능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9.12.06. 개정된 내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 건축과-8298(2020.02.19)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7,023㎡ (아파트:26,914.83㎡, 근린생활시설:108.17㎡)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9층 6개동, 총 578세대 중 일반분양 5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56세대 , 다자녀 특별공급 5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5세대 포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세대수	저층우선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민영주택	2020000167	01	079.3600	79	79.3600	24.7300	104.0900	46.3200	150.4100	44.1234	191	19	19	37	5	80	111	–
		02	084.9200	84A	84.9200	26.7400	111.6600	49.5700	161.2200	47.2147	326	32	32	64	9	137	189	3
		03	084.9000	84B	84.9000	27.7500	112.6500	49.5600	162.2100	47.2036	52	5	5	9	1	20	32	–
		04	113.2700	113	113.2700	35.4800	148.7500	66.1200	214.8700	62.9770	3	–	–	–	–	–	3	–
		05	123.9400	123	123.9400	41.1800	165.1200	72.3400	237.4600	68.9094	2	–	–	–	–	–	2	–
		06	125.8900	125	125.8900	39.6800	165.5700	73.4800	239.0500	69.9936	2	–	–	–	–	–	2	–
		07	156.4200	156	156.4200	50.0500	206.4700	91.3000	297.7700	86.9680	2	–	–	–	–	–	2	–
		합계									578	56	56	110	15	237	341	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은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천원)

주택형	층별	동,호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계약시	20.04.27	20.06.26	20.09.28	20.12.28	21.05.26	21.09.27	22.01.26	입주지정일
79	1층	101동-1,2,3,4 103동-1,2	6	39,249	223,851	263,100	10,000	16,310	26,310	26,310	26,310	26,310	26,310	26,310	78,930
	2층		6	39,249	232,551	271,800	10,000	17,180	27,180	27,180	27,180	27,180	27,180	27,180	81,540
	3층		6	39,249	238,251	277,500	10,000	17,750	27,750	27,750	27,750	27,750	27,750	27,750	83,250
	4층		6	39,249	244,051	283,300	10,000	18,330	28,330	28,330	28,330	28,330	28,330	28,330	84,990
	5층~14층		60	39,249	249,851	289,100	10,000	18,910	28,910	28,910	28,910	28,910	28,910	28,910	86,730
	15층~28층		54	39,249	255,651	294,900	10,000	19,490	29,490	29,490	29,490	29,490	29,490	29,490	88,470
	1층	106동-3,4	2	39,249	217,451	256,700	10,000	15,670	25,670	25,670	25,670	25,670	25,670	25,670	77,010
	2층		2	39,249	225,951	265,200	10,000	16,520	26,520	26,520	26,520	26,520	26,520	26,520	79,560
	3층		2	39,249	231,551	270,800	10,000	17,080	27,080	27,080	27,080	27,080	27,080	27,080	81,240
	4층		2	39,249	237,251	276,500	10,000	17,650	27,650	27,650	27,650	27,650	27,650	27,650	82,950
	5층~14층		20	39,249	242,851	282,100	10,000	18,210	28,210	28,210	28,210	28,210	28,210	28,210	84,630
	15층~28층		25	39,249	248,451	287,700	10,000	18,770	28,770	28,770	28,770	28,770	28,770	28,770	86,310
84A	1층	102동-1,2,3,4 103동-3,4 104동-1 105동-1,2	8	41,999	242,401	284,400	10,000	18,440	28,440	28,440	28,440	28,440	28,440	28,440	85,320
	2층		9	41,999	251,801	293,800	10,000	19,380	29,380	29,380	29,380	29,380	29,380	29,380	88,140
	3층		9	41,999	258,001	300,000	10,000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90,000
	4층		9	41,999	264,301	306,300	10,000	20,630	30,630	30,630	30,630	30,630	30,630	30,630	91,890
	5층~14층		90	41,999	270,501	312,500	10,000	21,250	31,250	31,250	31,250	31,250	31,250	31,250	93,750
	15층~29층		74	41,999	276,801	318,800	10,000	21,880	31,880	31,880	31,880	31,880	31,880	31,880	95,640
	1층	104동-3,4 105동-4 106동-1,2	5	41,999	235,301	277,300	10,000	17,730	27,730	27,730	27,730	27,730	27,730	27,730	83,190
	2층		5	41,999	244,401	286,400	10,000	18,640	28,640	28,640	28,640	28,640	28,640	28,640	85,920
	3층		5	41,999	250,501	292,500	10,000	19,250	29,250	29,250	29,250	29,250	29,250	29,250	87,750
	4층		5	41,999	256,601	298,600	10,000	19,860	29,860	29,860	29,860	29,860	29,860	29,860	89,580
	5층~14층		50	41,999	262,701	304,700	10,000	20,470	30,470	30,470	30,470	30,470	30,470	30,470	91,410
	15층~29층		57	41,999	268,801	310,800	10,000	21,080	31,080	31,080	31,080	31,080	31,080	31,080	93,240
84B	2층	104동-2	1	41,989	244,211	286,200	10,000	18,620	28,620	28,620	28,620	28,620	28,620	28,620	85,860
	3층		1	41,989	250,311	292,300	10,000	19,230	29,230	29,230	29,230	29,230	29,230	29,230	87,690
	4층		1	41,989	256,411	298,400	10,000	19,84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89,520
	5층~14층		10	41,989	262,511	304,500	10,000	20,450	30,450	30,450	30,450	30,450	30,450	30,450	91,350
	15층~29층		15	41,989	268,611	310,600	10,000	21,060	31,060	31,060	31,060	31,060	31,060	31,060	93,180
	2층	105동-3	1	41,989	240,311	282,300	10,000	18,230	28,230	28,230	28,230	28,230	28,230	28,230	84,690
	3층		1	41,989	246,311	288,300	10,000	18,830	28,830	28,830	28,830	28,830	28,830	28,830	86,490
	4층		1	41,989	252,311	294,300	10,000	19,430	29,430	29,430	29,430	29,430	29,430	29,430	88,290
	5층~14층		10	41,989	258,311	300,300	10,000	20,030	30,030	30,030	30,030	30,030	30,030	30,030	90,090
	15층~25층		11	41,989	264,311	306,300	10,000	20,630	30,630	30,630	30,630	30,630	30,630	30,630	91,890
113	17층	105동-2	1	56,020	528,980	585,000	10,000	4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175,500
	18층		1	56,020	528,980	585,000	10,000	4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175,500
	19층		1	56,020	528,980	585,000	10,000	4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175,500
123	최상층	101동-1, 3	2	61,297	588,703	650,000	10,000	5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195,000
125	26층,27층	105동-3	2	62,262	589,738	652,000	10,000	55,200	65,200	65,200	65,200	65,200	65,200	65,200	195,600
156	최상층	102동-1,3	2	77,361	734,639	812,000	10,000	71,200	81,200	81,200	81,200	81,200	81,200	81,200	243,600

중도금 무이자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x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발코니확장
- 발코니확장 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비			비 고
	확장비 총액	납부방법		
		계약금(10%)	잔 금(90%)	
79	10,900	1,090	9,810	
84A	11,900	1,190	10,710	
84B	11,900	1,190	10,710	
113	12,500	1,250	11,250	
123	14,500	1,450	13,050	
125	12,900	1,290	11,610	
156	15,500	1,550	13,950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추후 별도 안내예정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그 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공급세대수

구분			79	84A	84B	113	123	125	156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6	1	–	–	–	–	9
	장기복무 제대군인		3	5	1	–	–	–	–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5	1	–	–	–	–	9
	중소기업 근로자		2	3	1	–	–	–	–	6
	장애인		9	13	1	–	–	–	–	2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9	32	5	–	–	–	–	5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8	48	7	–	–	–	–	83
		일반공급(25%)	9	16	2	–	–	–	–	27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5	9	1	–	–	–	–	15
합계			80	137	20	–	–	–	–	23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5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없음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추천기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강원서부보훈지청 복지팀
– 장애인 : 강원도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5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3개월이상 거주) 또는 속초시에 3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속초시를 제외한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속초시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자 ②배점 다득점 자 ③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④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배점기준표(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중 영유아 3명이하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중 영유아 2명	10	
		자녀중 영유아 1명	5	
세대 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11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3개월이상 거주) 또는 속초시에 3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입주자격 서류 제출시 출산 증명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이하인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되어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한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 한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3개월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 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3개월이상 거주자 ②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 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공급유형		소득기준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5,401,815원 ~6,482,177원	6,165,203원 ~7,398,242원	6,699,866원 ~8,039,838원	7,348,892원 ~8,818,669원	7,997,918원 ~9,597,500원	8,646,944원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30% 이하	6,482,178원 ~7,022,358원	7,398,243원 ~8,014,763원	8,039,839원 ~8,709,825원	8,816,670원 ~9,553,558원	9,597,501원 ~10,397,292원	10,376,333원 ~11,241,026원

㉠우선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위소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부부 중 1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649,026)*(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세대수의 3%이내) :1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3개월이상 거주 또는 속초시에 3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개월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 사항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3개월이상 거주 또는 속초시에 3개월미만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 속초시 3개월이상 거주자는 속초시에 3개월 미만 거주자, 강원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1인 1건만 신청가능)이 불가함 – 본 주택에 청약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함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민영주택	속초시 / 강원도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총 납입금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전용면적 85㎡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무주택기간	32	만30세미만 미혼 무주택자	0	08년 이상 ~ 0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미만(무주택자에한함)	2	0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만19세 이상~ 만30세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2)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08년 이상 ~ 0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계산 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0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점 만점 기준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가점항목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다자녀가구 /신혼부부/노부모부양자	2020.03.02.(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10:00 ~ 14:00)	1.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2.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0.03.03.(화) 08:00 ~ 17:30	1.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0.03.04.(수) 08:00 ~ 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됨 (방문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세대구성 사유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 구성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 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 접수가 불가함, 창구접수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1통 (단, 재외동포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접수처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 일시 : 2020.03.11.(수) • 확인방법 :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03.24.(화) ~ 2020.03.26.(목)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15)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 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3.11 (수) ~ 2020.03.20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3.11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는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 3개월이상 거주신청자가 속초시 3개월미만 또는 강원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되어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절차
– 계약체결 일시 : 2020.03.24.(화) ~ 2020.03.26.(목), 3일간(시간 10:00 ~ 16:00)
– 계약체결 장소 : 속초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15 / 문의전화 033-638-9666)
■ 계약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계약시구비사항
본인 계약시	공통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서명인증서 1통 (외국인에 한함)]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주민등록표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최하층 우선배정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 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며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한 경우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수인/동의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KB국민은행	분양대금	302501-04-472467	아시아신탁(주)(주택도시보증공사)

• 상기 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 계좌로서 1,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정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일체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3동 2304호 홍길동인 계약자인 경우 '01032304홍길동'(단, 부적격으로 판명 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 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보증서 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중도금 대출은 관련정책,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다주택자 규제,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등 중도금 대출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 해지(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무이자)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2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에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VI 별도 품목 계약

▣ 기타 유상옵션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천원)

주택형	시공부위	시공대수	제조사	판매가	비고
079.36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삼성	7,360	일반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4,62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삼성	9,380	무풍공기청정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5,830	
084.9200A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다목적실	6	삼성	8,490	일반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4,63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다목적실	6	삼성	10,900	무풍공기청정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5,840	
084.9000B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다목적실	6	삼성	8,490	일반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4,63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다목적실	6	삼성	10,900	무풍공기청정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5,840	
113.27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다목적실	6	삼성	8,840	일반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4,630	
	가족실(세대분리)	1	삼성	2,15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다목적실	6	삼성	11,260	무풍공기청정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5,840	
	가족실(세대분리)	1	삼성	2,470	
123.94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	삼성	10,960	일반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5,26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	삼성	13,780	무풍공기청정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6,470	
125.89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가족실	6	삼성	9,140	일반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5,280	
	가족실(세대분리)	1	삼성	2,23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가족실	6	삼성	11,560	무풍공기청정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6,490	
	가족실(세대분리)	1	삼성	2,550	
156.42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가족실+서재	7	삼성	11,640	일반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5,41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가족실+서재	7	삼성	14,460	무풍공기청정 GRILL TYPE
	거실+주방+안방	3	삼성	6,620	

• 상기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할 경우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에는 선냉매배관 매립공사가 안방에 1개소, 거실에 1개소에만 기본 제공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 제공(2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함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일정은 추후 통보됨)
• 선택형별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실내기 또는 실외기 포함)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 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입주자가 추가로 스탠드 형 및 벽걸이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 에어컨 선택이 가능함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가구

(단위 : 천원)

유형	주택형(선택)	판매가	비고
팬트리	079.3600	2,500	
	084.9200A	3,110	
	084.9000B	2,140	
	113.2700	3,050	
	125.8900	3,030	
중문	079.3600	1,050	원슬라이딩
	084.9200A(확장기본형)	1,400	2연동
	084.9200A(수납강화형)	1,050	원슬라이딩
	084.9000B	1,400	2연동
	113.2700(확장기본형)	1,400	2연동
	113.2700(수납강화형)	1,050	원슬라이딩
	113.2700(임대세대)	1,400	2연동
	123.9400	1,050	원슬라이딩
	125.8900(확장기본형)	1,400	2연동
	125.8900(수납강화형)	1,050	원슬라이딩
	125.8900(임대세대)	1,540	3연동
	156.4200	1,400	2연동
엔지니어드스톤	079.3600(확장기본형)	2,490	상판 + 벽
	079.3600(무상옵션1)	2,360	상판 + 벽
	079.3600(무상옵션2)	2,490	상판 + 벽
	084.9200A(확장기본형)	1,370	벽
	084.9200A(수납강화형)	1,410	벽
	084.9000B(확장기본형)	1,230	벽
	084.9000B(수납강화형)	1,230	벽
	113.2700(확장기본형)	1,380	벽
	113.2700(수납강화형)	1,410	벽
	113.2700(임대세대)	940	벽
	123.9400	1,370	벽
	125.8900(확장기본형)	1,370	벽
	125.8900(수납강화형)	1,400	벽
	125.8900(임대세대)	1,030	벽
	156.4200	1,730	벽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할 경우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전

(단위 : 천원)

주택형	유형	구분	제조사	판매가	비고
공통	빌트인냉장고	TBI냉장고(BRS665040SR)	삼성	5,390	
		TBI냉장고(BRS655140SR)	삼성	7,200	
공통	빌트인김치냉장고	RQ22K5(L/R)01EC	삼성	1,250	패널 포함
공통	식기세척기	DW60J5030SS	삼성	630	
		DWA-76U5B	SK매직	780	
공통	전기쿡탑 (3구쿡탑)	가스 1구 + 하이라이트 2구(GRA-BH301H)	SK매직	670	
		가스 1구 + 인덕션 2구(GRA-BI320H)	SK매직	800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ERA-BT030)	SK매직	800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기타 유상옵션 납부계좌	추후 안내 예정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기타 유상옵션 품목(플러스 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임.

▣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마루, 현관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다용도실 타일 (타일 붙임 몰탈 포함)	수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2)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주방 벽 타일/인조석(타일 붙임 몰탈 포함), 다용도실/실외기/도장, 걸레받이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3) 천장	다용도실/실외기/도장, 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천정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4)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창고장(해당 타입), 드레스룸장, 화장대, 붙박이장, 수납선반 및 악세서리 일체	미설치
5) 주방	콘센트, 수전류, 액세서리류, 벽/바닥 타일, 천장재, 코킹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6) 욕실	콘센트,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비데(부부욕실), 벽/바닥 타일, 천장재, 석재(세면대 뒷턱),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도막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7) 창호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플라스틱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루버
8) 조명기구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9) 기타	수전류(세탁수전 등)	미설치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천원)

주택형	079.3600	084.9200A	084.9000B	113.2700	123.9400	125.8900	156.4200	비고
금액	25,762	27,635	27,880	37,351	41,461	41,053	51,194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및 관련업무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함
• 마이너스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 중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 품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세대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문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함

VII 기타

■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명칭은 '속초2차 아이파크'로 결정하였으며, 아파트 동·호수 표기는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전등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면적표현은 소수점 2째 자리 제곱미터(㎡) 까지 표현되며 (면적산출근거에 의해 소수점3째 자리에서 버림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2째자리 (소수3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1㎡ 만큼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단,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로 함). 이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함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됨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계획 변경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는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준공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바람
•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 된 자는 물론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렵힌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상품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에 입주예정자는 동의한 것으로 한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함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단지 주변현황[인접APT 단지, 주변상가, 지하철역, 도로, 공원(기부채납 공원 포함)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 바람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공용시설인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입주자간에 협의하여 사용한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 (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전환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한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 중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신청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함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경우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피트공간 등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자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건본주택은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위치,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 (휘트니스센터,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기본형 선택세대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없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 등에 표시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발코니 확장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평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할 경우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불가피하게 발코니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VIII 단지 여건사항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공급현황은 아래와 같음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관리사무소	1	281.47	방재실, MDF실,홀,화장실 포함
경비실	1	10.27	
경로당	1	147.89	
어린이집	1	251.54	
작은도서관	1	185.97	
휘트니스	1	886.62	골프연습장, GX룸,탈의실,샤워실,통신실 포함
무인택배실	1	25.98	
외부계단	1	2.75	
펌프실. 전기실	1	313.01	
지하주차장	2	26,013.99	지하1층,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1	369.40	공용면적(화장실,통신실) 포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됨. (단, HDC IoT 서비스, 홈네트워크 원격제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 회신 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속초시 색채 가이드라인에 공동주택 색채경관설계지침(속초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추후 색채 및 경관조명은 도시의 트렌드 변화, 색채의 유형변화 등에 의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함
• 단지주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 및 계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역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주택은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옥탑부 형태, 주동 형태, 저층 석재, 창호 형태, 측벽 디자인, 외부 색채, 벽체 마감, 외부 로고, 단지 식재, 포장 계획, 층고 디테일, 방음벽 설치, 주차 게이트 형태, 특화 디자인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내용, 법규변경, 시공시 현장 여건,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수공간,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휴게공간, 단지 내부 보도 및 비상차로 등의 계획은 계약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인허가 등 요인으로 설치 계획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로 마감되나, 디자인을 위해 일부 구간에 도장이 혼용될 수 있음
• 부속동 및 시설물은 마감재 색상, 재질과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의 벽체 및 디자인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내용, 옥외 광고 심의에 따라 측벽 사인물 위치 및 디자인, 단지 명칭, 색채, 옥외시설물 등은 입주자 동의 없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특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통신중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 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함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03,4동 저층세대는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 휴게공간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및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저층세대의 경우 지하주차램프로 인하여 조망이 불리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DA 위치, TOP LIIGHT,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대의 위치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이 설치됨(단, 옵션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할 경우 계약자 본인이 냉매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함)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마감은 동별, 층별, 위치별 시공 부위에 따라 화강석 또는 석재뿜칠, 수성페인트 등으로 처리됨
• 단지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하여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 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주차장 등은 아파트/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음
•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펜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형 및 공급단지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 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서비스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의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공용 시설물인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주변 인접대지와 레벨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색상 및 보도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로 및 1층 아파트 현관은 주변 대지 여건 및 상업시설 디자인 특화에 따라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최상층의 옥상 등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1층의 녹지공간과 같이 관리에 각별이 유념하여야 하고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은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입면에 설치되는 수직수평 돌출구조물(몰딩)에 접한 세대의 각 실에서의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직수평 돌출구조물의 사이즈는 추후 임의 조정 시공될 수 있으며, 수평몰딩의 경우는 돌출 부분에 부딪히는 빗소리 등에 의해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 전용 주차장(주차대수 4대)은 지상주차장에 위치하며,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 이외의 대형 승합차 등은 주차가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시 이삿짐 차량이 단지내부로 진입은 가능하나, 일부 고층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조경석 및 콘크리트 옹벽 등이 설치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출입 및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보행자 출입구의 형태 및 구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욕실/현관 등 세대내 단차부위는 방수턱 물막이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이 걸릴 수 있으나,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
• 타일마감 부분에 대해서는 몰탈 떠붙임 공법(화장실 벽체)으로 시공된 부분은 몰탈이 100%충전되지 않아 빈 공간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부분이 아님
• 각종 장비(각종 휀, 환기설비, 배수펌프, 비상발전기, 방화셔터 등) 미가동으로 인한 장비의 고장 및 하자발생(결로, 곰팡이)에 대해서는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책임사항으로 당사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위치 등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특화여부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변경에 따른 선형이나 포장 및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외곽과의 높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옹벽, 자연석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옹벽의 형태와 공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 수인 하여야 함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엘리베이터 모델은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확정 및 설치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이 필로티로 구성된 동은 입구 상부에 보행자 안전시설인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2층 세대는 빗물에 의한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와 인접하여 교통혼잡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의 길이 및 높이 등),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피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레벨은 건물군의 출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학교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IoT 관련 유의사항
• 카카오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무선 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사업자도 가능하며, 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세대에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월패드 터치스크린 및 IPARK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시부터 10년간 사용 가능하며, (주)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일부는 유상으로 제공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IX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당사자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특히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함(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됨.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됨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 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함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대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 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바람
• 본공사시 타일류, 석재류(인조석, 천연석)의 시공 나누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주방, 아트월, 욕실 등)
• 주방가구 상판은 인조대리석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중 변경 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 세대분리형(부분임대형) 선택에 따라 위치,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시 개별 공지 예정임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천연석은 천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음,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일부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내 설치되는 대피공간 대신 비상시 "하향식 비상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됨
• 일부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 설치되는 대피공간 대신 "인접세대 경계에 파괴 용이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니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고 해당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예 : 물건적치 또는 창고문 설치 등)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이로인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용(AC)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하시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세대 내 공기감지센서(무선AP 일체형)는 발코니 확장 시 기본설치 품목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핸드레일, 현관 방화문, 가구류, 바닥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 및 색상,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다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기본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옹벽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며, 세대 시공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쿨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 견본주택은 79, 84A 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카다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리벽은 전시용이므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로 선택할 수 없음
■ 커뮤니티 시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 · 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보육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개소, 경비실2개소, 경로당1개소, 어린이집1개소, 어린이놀이터2개소, GX룸1개소, 작은도서관(문고,열람실)1개소, 주민운동시설(야외운동시설 3개소) 등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기밀등급이 2등급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1개소)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내 현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일부), 부속동9일부)등 전세대 LED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속동(휘트니스센터,관리사무소,경로당,보육시설,근린생활시설) 화장실
강제환기시스템	적용	단위세대내 각 실
절수설비	적용	단위세대내 수전류(샤워, 양변기, 싱크수전)
태양광시스템	적용	태양광 (발전용량 128KW) 에너지원 사용 위치 – 태양광: 공용전기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등급	AA등급		비고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배선	침입감지기	
	2	예비배관	전자경비시스템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욕실폰	
	4	통신배관실(TPS)	주방TV	
	5	폐쇄회로TV장치	일괄소등제어	
	6	가스밸브 제어기	디지털도어록	
	7	조명 제어기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제어	
	8	난방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9	현관방범 감지기		
	10	주동현관 통제기		
	11	원격검침 전송장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	비고
건축	㈜건축사사무소광장	1,551,850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	(주)나이스에너지엔지니어링	404,502	
소방, 정보통신	㈜건축사사무소건일종합기술	264,000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24,204,990,000	제01282020-101-0000600호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 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서미개발이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서미개발이고, 아시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 포함하되 설계상 하자 제외)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아시아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서미개발과 수탁자 아시아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서미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사업주체

구분	사업주체(수탁자)	위탁자
상호	아시아신탁(주)	㈜서미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1, 301호
등록번호	120-87-07104	303-81-69080

▣ 시공회사

구분	시공회사
상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등록번호	334-86-00815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hdc.i-park.com/sokcho2)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15 / 문의전화 033-638-9666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